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연천군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연천군의회의회장

연천군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연천군에 소재한 군사시설 및 군 훈련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제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기에
-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군사시설과 군 훈련 및 피해사항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군사시설과 군 훈련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범위와 대상을 정함(안 제3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타 참고사항
 - 1)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
 - 2) 철원군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 조례
 - 3) 포항시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

5. 의견제출

- 가. 제출기한: 2022년 4월 14일
-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연천군(의회)홈페이지 등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서)
-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사유 등
- 라. 제출기관: 연천군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19 / FAX: 031-839-2509

연천군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소재한 군사시설 등의 운용 및 군 훈련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시설 등”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군사시설을 말한다.
2. “군 훈련”이란 군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훈련을 말한다.
3. “피해사항”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 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 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간접적 요인에 의한 피해
 - 다.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제3조(지원범위와 대상)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사시설 등의 운용 및 군 훈련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지역 및 주변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
2. 관계 기관에 대한 피해대책 수립 촉구 활동

제4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제3조 각 호의 활동과 상관없는 활동에 보조금이 사용된 경우 즉시 반환을 요구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종합민원과
입 안 자	발의 의원	연천군의회 의원 김 미 경 외 6인

관계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防空)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에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에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조(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공방어시설, 군용통신시설, 군용부두 및 전쟁장비·물자의 생산·저장시설을 말한다.

참고사항

□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 (2016. 6. 2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소재한 군사시설과 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서 국군과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 훈련장, 폭발물 관련시설, 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2. “군 훈련”이란 국군은 물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군사훈련을 말한다.
3. “피해사항”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 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 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간접적 요인에 의한 피해
 - 다.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제3조(지원범위와 대상)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1.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에 따른 건의활동
2. 군 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안전대책에 대한 개선요구 활동
3. 군 훈련에 따른 피해사항에 대한 건의활동
4. 군 훈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지역개발을 촉구하는 토론회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활동과 상관없는 활동에 보조금이 사용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철원군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 조례 (2017. 7. 26.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 소재한 군사시설과 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개발 및 주민피해 구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서 군(軍)이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 피탄지, 훈련장, 폭발물 관련시설, 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2. “군 훈련”이란 군(軍)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군사훈련을 말한다.
3. “피해사항”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 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 나. 토양 및 수질, 분진 등 환경오염 피해
 - 다.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간접적 요인에 의한 피해

제3조(지원범위와 대상)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지역 및 주변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
2. 피해지역 마을 및 피해대책 추진 민간단체 활동
 - 가. 군사시설 등으로 제한된 지역 규제 완화 건의활동
 - 나. 군 훈련에 따른 피해대책 건의활동
 - 다. 군 훈련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지역개발 촉구 토론회 활동
 - 라. 군 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안전대책 개선요구 활동
 - 마. 피해지역 대책관련 교육 및 연수 등

제4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제3조 각 호의 활동과 상관없는 활동에 보조금이 사용된 경우 즉시 반환을 요구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포항시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 (2021. 2. 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 소재한 군사시설과 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서 국군과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 훈련장, 폭발물 관련 시설, 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2. “군 훈련”이란 국군은 물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군사훈련을 말한다.
3. “피해사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군 훈련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요인에 의한 피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군사시설 및 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구제 활동) 시장은 군사시설 및 군 훈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피해구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에 따른 건의활동
2. 군 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안전대책에 대한 개선요구 활동
3. 군 훈련에 따른 피해사항에 대한 건의활동
4. 군 훈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지역개발을 촉구하는 토론회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피해구제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활동과 상관없는 활동에 보조금이 사용된 경우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군사시설과 군 훈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활한 구제 활동을 위해 정부 및 군 관계자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